

國會法改正法律案

27

~~9-621~~

공백

國 會 法 改 正 法 律 案

議 案 番 號	
------------	--

提案年月日：1981. 1. .
提 案 者：選舉法等政治關係法
特 別 委 員 長

1. 提 案 經 緯

- 가. 1980年11月8日 第4次 本會議 議決에 의하여 構成된 選舉法
等政治關係法特別委員會가 國會法改正法律案을 委員會案으로 提案키
로 됨에 따라 그 立案을 專擔할 第2小委員會(金永均委員,
李範烈委員, 李鍾贊委員, 朴奉植委員)를 構成하여 이를 委任한 바
있음.
- 나. 1981年1月22日 第9次委員會에서 第2小委員長(金永均委員)으
로부터 小委員會에서 成案한 國會法改正法律案에 대한 報告를 들
고 이를 審査한 後 委員會案으로 採擇하기로 原案可決하고, 法制
司法委員會의 體系와 字句의 審査를 받았음.

2. 提 案 理 由

憲法 第4章 國會에 관한 規定에 따라 國會法을 全面改正, 議員의
職은 各界의 專門家가 兼職할 수 있도록 兼職範圍를 넓히고, 議員
의 意見은 會議에서 充分히 開陳될 수 있도록 함과 同時에 民意
를 代辯·反映할 수 있게 하며, 議員은 國政을 論함에 있어 國益
을 最優先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非理와 煽動, 黑白論理와 黨利黨略
을 일삼는 弊習에서 脫皮하여 새로운 民主政治의 발전에 寄與하게
하기 위한 것임.

~~1-1-1~~

3. 主 要 骨 子

- 가. 第1章의 國會의 集會를 總則으로 하여 目的·國會議員의 任期·登錄·議席配定·集會 및 開會式을 規定하고, 臨時會의 公告期間을 集會要求者의 區別없이 集會期日 3日前으로 單一化함.
(案 第1條 내지 第7條)
- 나. 議長·副議長의 定數를 明示하고 그 任期는 議員任期를 勘案하여 3年에서 2年으로 함. (案 第10條 및 第11條)
- 다.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새로 構成되는 國會에서 議長이나 副議長이 選出될 때까지 國會公務員에 대한 人事 및 豫算에 관하여 事務總長이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도록 하여 機關運營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 (案 第16條第2項)
- 라. 議長·副議長 및 常任委員長은 兼職을 制限하여 그 職務遂行에 專念하도록 함. (案 第22條 및 第42條第4條)
- 마. 國會事務處와 事務總長에 관한 事項을 統合調整하고 國會事務處에 國會圖書館을 둠으로써 國會圖書館法은 따로 두지 아니하기로 함.
(案 第23條)
- 바. 國會의 豫備金은 事務總長이 管理하되,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와 議長의 承認으로 支出하도록 하고, 閉會중에는 議長의 承認만으로 支出한 후 다음 會期初에 國會運營委員會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豫備金의 使用을 效率적으로 하도록 함. (案 第24條第3項)
- 사. 議員은 國家利益 優先 및 良心에 따라 職務를 遂行하도록 하고, 清廉·品位維持義務의 規定을 둠. (案 第25條 및 第26條)
- 아. 議員의 兼職範圍를 大幅擴大하여 過去와 같은 職業政治人의 弊習

을 止揚하도록 함. (案 第31條第1項)

자. 政黨의 黨員資格이 있는 敎員이 議員으로 當選되었을 때에는 敎員의 職은 休職되도록 하였으며, 兼職議員의 兼職自體가 清廉義務에 違反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議長이 그 職을 辭任할 것을 勸告할 수 있도록 함. (案 第31條第項 내지 第5項)

차. 常任委員會의 委員을 辭任할 수 있는 兼職限界를 行政各院·部の 次官·處長·廳長의 職을 兼任한 議員까지 擴大함.

(案 第40條第4項)

1) 카. 常任委員長 또는 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의 辭任規定을 新設함으로써 委員會運營에 蹉跌이 없도록 함.

(案 第42條第6項 및 第46條第3項)

12) 타. 委員會에 專門委員외에 필요한 公務員을 두고, 專門委員과 公務員은 國會事務處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委員會의 法制活動 및 議事의 支援을 效率적으로 할 수 있게 함.

(案 第43條第1項)

13) 파. 豫算案과 決算의 專擔審查機關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두고 그 委員은 交涉團體의 所屬議員數의 比率과 常任委員會의 委員數의 比率에 따라 50人이내로 選任하도록 하며, 이 委員會는 필요에 의하여 小委員會 이외의 數個의 分科委員會로 나누어 審査할 수 있도록 하고, 歲入豫算案과 관련 있는 法案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要請으로 連席會議를 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常任委員會에서 豫算審査時에 露呈되었던 短點을 補完할 수 있도록 함. (案 第45條·第47條第3項·第55條 및 第60條第3項)

(4)

- 하. 委員會의 議事定足數를 在籍委員 3分の 1이상으로 하여 委員會 開議 및 議事進行을 容易하게 함. (案 第52條)
- 거. 委員會에서는 議事の 圓滑化를 期할 수 있도록 發言回數 및 時間 등의 制限을 緩和하고, 委員會에서의 動議는 特別히 多數의 贊成者를 요하는 規定에 불구하고 2人 이상의 贊成으로 議題가 될 수 있게 하여 委員會에서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 議員의 意見이 充分히 反映될 수 있도록 補完함. (案 第57條 및 第66條)
- 너. 委員會는 重要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요하는 案件의 審査를 위하여 公聽會를 열되, 그 開催節次 및 方法등을 追加하여 補完함. (案 第61條)
- 더. 本會議 開議時間을 午後 2時로 定함으로써 兼職議員이 開議時間 前에는 自己 職務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한편 議員으로서의 職分을 다 할 수 있도록 함. (案 第67條)
- 러. 議長은 閉會 또는 休會중에는 發議 또는 제출된 案件에 대하여 本會議 보고를 省略하고 所管常任委員會에 回附하여 審査할 수 있게 함. (案 第75條第1項)
- 머. 法制司法委員會에서의 體系·字句에 대한 審査에서는 그 審査를 簡略하게 하기 위하여 提案者の 趣旨說明과 討論을 省略할 수 있도록 함. (案 第79條第1項)
- 버. 本會議의 發言時間은 20分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政府에 대한 質問, 豫算案 및 決算, 國務委員등의 解任案, 기타 議長이 重要하다고 인정한 案件에 限하여는 30分을, 交渉團體를 가진 政黨을 代表하는 議員이나 交渉團體의 代表議員이 政黨 또는 交

涉團體를 代表하여 發言할 때에는 40分까지 許可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發言時間을 事案別·發言者의 地位등으로 區分하였으며, 補充發言·議事進行 및 身上發言은 10分으로 制限하여 意見의 充分한 開陳과 議事의 能率化를 期하도록 함. (案 第97條)

서. 非公開會議內容에 대한 秘密維持의 根據規定을 정하고, 議員 또는 一般人이 會議錄을 轉載하거나 複製하고자 할 때에는 議長의 許可를 얻도록 함으로써 會議錄의 版權을 國會에 둠.

(案 第111條第2項 및 第3項)

어. 議員이 政府에 書面으로 質問하려고 할 때에는 20人이상의 贊成으로 議長에게 質問書를 제출하고, 政府는 移送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書面 또는 口頭로 答辯하되, 그 期間內에 答辯하지 못할 때에는 그 理由와 期間을 國會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本會議 質問部分에서 漏落된 部分이나 또는 閉會期間중이라도 政府의 政策에 대하여 意見을 물을 수 있게 制度化함.

(案 第115條)

저. 國會에서 採擇된 請願에 대한 政府의 處理結果를 다음 定期國會에 書面報告하도록 되었던 것을 그 處理結果를 遲滯없이 國會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國會의 意思에 대하여 政府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規定함. (案 第119條第2項)

처. 特定事案에 대한 國政調査는 30人이상의 發議로 本會議의 議決을 얻어서 행하도록 하며 委員會에서 調査하고자 할 때에도 本會議의 議決을 거치도록 하고, 調査는 常任委員會, 2人이상의 議員으로 特別委員會 또는 班을 編成하되 同一한 交涉團體의

(6)

議員만으로는 構成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調查方法은 證言聽取·提出書類의 審査에 의하되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에 따라 행하도록 하고, 그 方法으로는 所期の 目的을 達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事案에 限하여 出張調查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過去의 監査權의 濫發등 國政監査에서의 短點을 補完함.

(案 第120條 내지 第124條)

키. 國政調查에는 그 公正性을 期하고 被調查機關의 機能등의 沮害가 없도록 調查上의 注意規定을 明文化하고, 調查結果에 대한 報告를 지체없이 하도록 함. (案 第125條 및 第126條)

터 議員의 退職事由를 議員이 兼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하거나 任期開始이후에 解職된 職의 權限을 行使한 때와 國會議員의 被選舉權이 없게 된 때로 規定하고, 議員이 關員된 때에는 大統領과 管中 轉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통지하도록 함.

(案 第134條 및 第135條)

퍼. 議員懲戒事由로 清廉의 義務의 違反者와 兼職議員이 議長으로부터 그 職의 辭任勸告를 받고 不應한 경우와 國政調查時的 注意規定 違反行爲등을 追加하고, 各 條文에 散在되어 있는 懲戒事由와 懲戒節次등을 統合 體系化함과 동시에 懲戒의 要求와 回附의 時限을 明示함으로써 懲戒事案에 대한 結末을 신속히 매듭짓도록 함. (案 第153條 내지 第155條)

- 허. 國會는 議事와 内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도록 根據
規定을 마련함. (案 第163條)
- 고. 이 法에 의한 議長이 選出될 때까지의 事務總長의 職務를 國家
保衛立法會議事務處長이 代行하게 하여 새로 構成되는 國會의
最初의 集會公告를 할 수 있도록 함. (案 附則第2項)
- 노. 기타 不合理 또는 不適當한 條文을 統·廢合하고 條文 및 字句
를 整理함.

~~2024~~

공백

法律第 號

國 會 法 改 正 法 律 案

國會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國 會 法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法은 國會의 組織·議事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
함으로써 國民의 代議機關인 國會의 效率的인 運營에 寄與함을 目的
으로 한다.

第 2 條 (國會議員의 任期) 國會議員 (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任期
는 4年으로 한다.

第 3 條 (登錄) 議員은 任期初에 當選證書를 國會事務處에 提示하고 登
錄하여야 한다.

第 4 條 (議席配定) 議員의 議席은 議長이 이를 정한다.

第 5 條 (定期會) 定期會는 每年 9月 20日에 集會한다. 그러나 그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集會하다.

第 6 條 (臨時會) 臨時會의 集會要求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集會期日
3日전에 公告한다.

第7條(開會式) 國會는 集會日에 開會式을 행한다.

第2章 國會의 會期와 休會

第8條(會期) ①國會의 會期는 議決로 이를 정한다. 會期는 議決로 延長할 수 있되 定期會는 90日을, 臨時會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②國會의 會期는 集會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國會는 定期會·臨時會를 합하여 年 150日을 초과하여 開會할 수 없다.

④大統領이 集會를 要求한 臨時會의 日數는 第3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하며 그 臨時會에서는 政府가 제출한 議案에 限하여 처리하고 國會는 大統領이 集會要求時에 정한 期間에 限하여 開會한다.

第9條(休會) ①國會는 議決로 期間을 정하여 休會할 수 있다.

②國會의 休會중이라도 大統領의 要求가 있을 때, 議長이 緊急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在籍議員 3分の 1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會議를 再開한다.

第3章 國會의 機關과 經費

第10條(議長·副議長의 定數) 國會에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둔다.

第 11 條 (議長 · 副議長의 任期) ①議長과 副議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選舉에 의하여 當選된 議長 또는 副議長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②議長選舉日이 副議長選舉日보다 먼저인 경우의 副議長의 任期는 議長의 任期와 같이 終了한다.

第 12 條 (議長의 職務) 議長은 國會를 代表하고 議事를 整理하며, 秩序를 維持하고 事務를 監督한다.

第 13 條 (議長의 委員會出席과 發言) 議長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그러나 表決에는 參加할 수 없다.

第 14 條 (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議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議長이 指定하는 副議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第 15 條 (臨時議長)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臨時議長을 選出하여 議長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

第 16 條 (事務總長의 議長職務代行) ①國會議員總選舉후 또는 議長과 副議長의 任期滿了후 最初の 臨時會의 集會公告에 관하여는 事務總長이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②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새로 構成되는 國會에서 議長이나 副議長이 選出될 때까지 國會所屬公務員의 人事 및 國會豫算에 관하여 事務總長이 議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第 17 條 (議長 · 副議長의 選舉) ①議長과 副議長은 國會에서 無記名

投票로 選舉하되 在籍議員過半數의 得票로 當選된다.

②第1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을 하고, 2次投票에도 第1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이면 最高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을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第18條(補闕選舉) 議長 또는 副議長이 闕位된 때나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闕位된 때에는 遲滯없이 補闕選舉를 實施한다.

第19條(臨時議長の 選舉) 臨時議長은 無記名投票로 選舉하되 在籍議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多數의 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第20條(議長등 選舉時의 議長職務代行) 議長등 選舉에 있어서 다음各號의 1에 해당될 때에는 出席議員중 年長者가 議長の 職務를 代行한다.

1. 國會議員總選舉후 또는 議長과 副議長の 任期滿了후 最初の 集會에서 議長과 副議長을 選舉할 때
2.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闕位되어 그 補闕選舉를 할 때
3. 議長 또는 副議長の 補闕選舉에 있어서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
4. 議長과 副議長이 모두 事故가 있어 臨時議長을 選舉할 때

第21條(議長·副議長の 辭任) 議長과 副議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

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第 22 條 (議長 · 副議長의 兼職制限) ①議長과 副議長은 특히 法律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議員 이외의 職을 겸할 수 없다.

②다른 職을 겸한 議員이 議長 또는 副議長으로 當選된 때에는 當選된 날에 그 職에서 解職된 것으로 본다.

第 23 條 (國會事務處) ①國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會에 事務處를 둔다.

②國會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和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③事務總長은 國會의 承認을 얻어 議長이 任免한다.

④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을 받아 國會의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 · 監督한다.

⑤國會事務處에 圖書 및 立法資料에 관한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을 둔다.

⑥이 法에 정한 외에 國會事務處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 24 條 (國會의 經費) ①國會의 經費는 獨立하여 國家豫算에 이를 計上한다.

②第 1 項의 豫算중에는 豫備金を 둔다.

③國會의 豫備金은 事務總長이 管理하되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와 議長의 承認을 얻어 支出한다. 다만, 閉會중일 때에는 議長의 承認으로 支出하고 다음 會期初에 國會運營委員會에 보고한다.

第 4 章 議 員

第 25 條 (宣誓) 議員은 任期初에 國會에서 다음의 宣誓를 한다.

“本 議員은 憲法을 遵守하고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노력하며, 國家利益을 最優先으로 하여 國會議員의 職務를 良心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 26 條 (清廉의 義務등) 議員은 清廉의 義務가 있으며, 議員으로서 品位를 維持하여야 한다.

第 27 條 (利權運動의 금지) 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利益 또는 職位를 取得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取得을 알선할 수 없다.

第 28 條 (逮捕同意要請의 節次) 議員을 逮捕 또는 拘禁하기 위하여 國會의 同意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管轄法院의 判事는 令狀을 發付하기 전에 逮捕同意要求書를 政府에 제출하여야 하며, 政府는 이를 受理한 후 遲滯없이 그 寫本을 첨부하여 國會에 逮捕同意를 要請하여야 한다.

第 29 條 (議員逮捕의 통지) 政府는 逮捕 또는 拘禁된 議員의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議長에게 令狀의 寫本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拘束期間의 延長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第 30 條 (釋放要求의 節次) 議員이 逮捕 또는 拘禁된 議員의 釋放要

求를 發議할 때에는 20人이상의 連署로 그 理由를 첨부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31條(兼職) ①議員은 政治活動 또는 兼職을 금지하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제외한 다른 職을 겸할 수 있다.

1.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政黨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은 제외한다.

2. 大統領·大統領選舉人·憲法委員會委員·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地方 議會議員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는 職

4. 政府投資機關管理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

5. 農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畜產業協同組合의 任·職員

6. 政黨法 第17條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言論人 및 敎員

②議員이 當選전부터 第1項의 兼職이 금지된 職을 가진 경우에는 任期開始日에 그 職에서 解職된다.

③政黨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敎員이 議員으로 當選된 때에는 任期중 그 敎員의 職은 休職된다.

④議員이 當選전부터 다른 職을 가진 경우에는 任期開始후 1月이내에, 任期중에 다른 職에 就任한 경우에는 就任후 15日이내에 議長에게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⑤議長은 議員이 다른 職을 겸하는 것이 第26條의 規定에 違反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職을 辭任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第 32 條 (手當·旅費) 議員은 따로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當과 旅費를 받는다.

第 33 條 (交通機關利用) 議員은 國有의 鐵道·船舶과 航空機에 無料로 乘用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公務의 경우에 限한다.

第 34 條 (請假 및 缺席) ① 議員이 事故로 인하여 國會에 出席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請假書 또는 缺席届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의 請假 및 缺席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第 5 章 交涉團體·委員會와 委員

第 35 條 (交涉團體) ① 國會에 20 人 이상의 所屬議員을 가진 政黨은 하나의 交涉團體가 된다. 그러나 다른 交涉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20 人 이상의 議員으로 따로 交涉團體를 構成할 수 있다.

②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은 그 團體의 所屬議員이 連署·捺印한 名簿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所屬議員에 異動이 있을 때에는 그 事實을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 36 條 (委員會의 種類) 國會의 委員會는 常任委員會와 特別委員會의 2 種으로 한다.

第 37 條 (常任委員會의 職務) 常任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議案과 請願 등을 審査한다.

第 38 條 (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1. 國會運營委員會

- 가. 國會運營에 관한 事項
- 나. 國會法 기타 國會規則에 관한 事項
- 다. 國會事務處所管에 속하는 事項
- 라. 다른 委員會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項

2. 法制司法委員會

- 가. 法務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 나. 法制處所管에 속하는 事項
- 다. 監查院所管에 속하는 事項
- 라. 憲法委員會事務에 관한 事項
- 마. 法院·軍法會議의 司法行政에 관한 事項
- 바. 彈劾訴追에 관한 事項
- 사. 議員의 懲戒에 관한 事項
- 아. 議員의 資格審査에 관한 事項
- 자. 法律案, 國會規則案의 體系·形式과 字句의 審査에 관한 事項

3. 外務委員會

- 가. 外務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 나. 國土統一院所管에 속하는 事項



4. 內務委員會

- 가. 內務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 나. 國家安全企劃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 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에 관한 事項
- 라. 總務處所管에 속하는 事項
- 마. 서울特別市所管에 속하는 事項

5. 財務委員會

- 가. 財務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6. 經濟科學委員會

- 가. 經濟企劃院所管에 속하는 事項
- 나. 科學技術處所管에 속하는 事項
- 다. 經濟科學審議會議事務에 관한 事項

7. 國防委員會

- 가. 國防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 나.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에 관한 事項

8. 文教公報委員會

- 가. 文教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 나. 文化公報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9. 農水產委員會

- 가. 農水產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10. 商工委員會

- 가. 商工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 나. 動力資源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11. 保健社會委員會

가. 保健社會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나. 援護處所管에 속하는 事項

12. 交通遞信委員會

가. 交通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나. 遞信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13. 建設委員會

가. 建設部所管에 속하는 事項

第39條(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 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는 國會規則으
로 定한다.

第40條(常任委員會의 委員) ①議員은 하나의 常任委員會의 委員(이
하“ 常任委員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國會運營委員會의 委員을
겸할 수 있다.

②各 交涉團體의 代表議員은 國會運營委員會의 委員이 된다.

③議長은 常任委員이 될 수 없다.

④國務總理·國務委員, 行政各院·部의 次官·處長·廳長의 職을 겸한
議員은 常任委員을 辭任할 수 있다.

第41條(常任委員의 任期) ①常任委員은 選任된 날로부터 2年間 在
任한다. 다만, 國會議員總選舉후 처음 選任된 委員의 任期가 閉會期
間중에 滿了되는 때에는 다음 會期에서 委員을 새로 選任한 前日까지
在任한다.

②補任된 常任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 42 條 (常任委員會의 委員長) ① 常任委員會에 委員長 (이하 “ 常任委員長 ” 이라 한다) 1 人을 둔다.

② 常任委員長은 당해 常任委員중에서 臨時議長選舉의 例에 準하여 國會의 會議 (이하 “ 本會議 ” 라 한다) 에서 選舉한다. 다만, 부득이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常任委員長의 選任을 議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③ 常任委員長의 任期는 常任委員으로서의 任期와 같다.

④ 常任委員長은 특히 法律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議員 이외의 職을 겸할 수 없다.

⑤ 다른 職을 겸한 議員이 常任委員長으로 選任된 때에는 選任된 날에 그 職에서 解職된 것으로 본다.

⑥ 常任委員長은 本會議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의 許可를 얻어 辭任할 수 있다.

第 43 條 (專門委員과 公務員) ① 委員會에 議員 아닌 專門知識을 가진 委員 (이하 “ 專門委員 ” 이라 한다) 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委員會에 두는 專門委員과 公務員은 國會事務處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專門委員은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命한다.

③ 專門委員은 委員會에서 發言할 수 있으며 本會議에서는 本會議議決 또는 議長의 許可를 얻어 發言할 수 있다.

第 44 條 (特別委員會) ① 國會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案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 特別委員會는 그 委員會에서 審査한 案件이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 存續한다.

第 45 條 (豫算決算特別委員會) ①豫算案과 決算을 審査하기 위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둔다.

②第 44 條第 2 項의 規定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準用한다.

第 46 條 (特別委員會의 委員長) ①特別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되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②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이 選任될 때까지는 委員중 年長者가 委員長の 職務를 代行한다.

③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은 그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그 職을 辭任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の 許可를 얻어 辭任할 수 있다.

第 47 條 (委員의 選任) ①常任委員은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 比率에 의하여 議長이 選任한다.

②어느 交涉團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의 常任委員選任은 議長이 이를 행한다.

③特別委員會의 委員은 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에 따라 議長이 常任委員중에서 選任한다. 다만,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委員은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 比率과 常任委員會의 委員數의 比率에 의하여 選任하되 50人을 초과할 수 없다.

④委員의 選任이 있는 후 交涉團體所屬議員數의 異動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委員會의 交涉團體別割當數를 變更하여 委員을 改選할 수 있다.

第 48 條 (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議事を 整理하며, 秩序를 維持하고 事務를 監督한다.

②委員長은 委員會의 議事日程과 開會日時을 정한다.

第 49 條 (幹事) ① 委員會에 幹事 若干人을 둔다.

② 幹事는 委員會에서 互選하고 이를 本會議에 보고한다.

③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定하는 幹事が 委員長의 職務를 代理한다.

第 50 條 (委員會의 提案) ① 委員會는 그 所管에 속하는 事項에 관하여 法律案 기타 議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第 1 項의 議案은 委員長이 提出者가 된다.

第 51 條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會期中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在籍委員 3 分の 1 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 開會한다. 그러나 開會중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限하여 開會한다.

第 52 條 (委員會의 議事·議決定足數) 委員會는 在籍委員 3 分の 1 이상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在籍委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53 條 (委員會에서의 傍聽등) ① 委員會에서는 議員이 아닌 者는 委員長의 許可를 얻어 傍聽할 수 있다.

② 委員長은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 54 條 (本會議중 委員會의 開會) 委員會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會議중에는 開會할 수 없다. 다만, 國會運營委員會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55 條 (小委員會) ①委員會는 小委員會를 들 수 있다.

②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第 1 項의 小委員會 이외에 그 審査의 필요에 의하여 이를 數個의 分科委員會로 나눌 수 있다.

第 56 條 (委員會의 審査) ①委員會는 案件을 審査함에 있어서 먼저 그 趣旨의 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 質疑·討論과 逐條審査를 거쳐 表決한다. 다만, 委員長은 逐條審査를 省略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案件이 豫算上의 措置를 隨伴하는 경우에는 政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 57 條 (委員의 發言制限) 委員은 委員會에서 同一議題에 대하여 回數 및 時間등에 制限없이 發言할 수 있다. 그러나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渉團體所屬議員數의 比率에 의하여 發言者數와 發言時間을 制限할 수 있다.

第 58 條 (委員 아닌 議員의 發言聽取) 委員會는 案件에 관하여 委員 아닌 議員의 發言을 들을 수 있다.

第 59 條 (參考資料의 閱覽과 帶出禁止) 委員長은 議員으로부터 委員會會議錄 기타 參考資料의 閱覽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審査 또는 調査에 支障이 없는 限 이를 許容할 수 있다. 그러나 國會밖으로는 帶出하지 못한다.

第 60 條 (連席會議) ①議長은 所管委員長의 의견을 들어 그 委員會로 하여금 다른 委員會와 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交換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表決은 할 수 없다.

②連席會議는 案件의 所管委員會의 會議로 한다.

③歲入豫算案과 관련있는 法案을 回附받은 委員會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連席會議를 열어야 한다.

- 第 61 條 (公聽會) ①委員會는 중요한 案件 또는 專門知識을 요하는 案件을 審査하기 위하여 公聽會를 열고 利害關係者 또는 學識·經驗이 있는 者등(이하“陳述人”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委員會에서 公聽會를 열 때에는 案件·日時·場所·陳述人·經費 기타 參考事項을 記載한 文書로 議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③陳述人の 選定과 發言時間은 委員會에서 정하며 陳述人の 發言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案件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 ④委員會가 主管하는 公聽會는 그 委員會의 會議로 한다.

- 第 62 條 (審査報告書의 제출) ①委員會는 案件의 審査를 마친 때에는 審査經過와 結果 기타 필요한 事項을 書面으로 議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第 1 項의 報告書에는 少數意見의 要旨를 記載하여야 한다.
- ③議長은 報告書가 제출된 때에는 本會議에서 議題가 되기 전에 印刷하여 議員에게 配付한다. 다만, 緊急을 요할 때에는 이를 省略할 수 있다.

- 第 63 條 (委員長의 보고) ①委員長은 所管委員會에서 審査를 마친 案件이 本會議에서 議題가 된 때에는 委員會의 審査經過와 結果를 本會議에 보고한다.
- ②委員長은 다른 委員으로 하여금 第 1 項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

다.

③委員長은 小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幹事로 하여금 補充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④委員長이 第1項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加할 수 없다.

第64條(小委員會委員長の 보고) 小委員會에서 審査를 마친 때에는 小委員會의 委員長은 그 審査經過와 結果를 委員會에 보고한다.

第65條(委員會會議錄) ①委員會는 委員會會議錄을 作成하고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1. 開議·會議中止와 散會의 日時
2. 議事日程
3. 出席委員의 姓名
4. 出席한 委員 아닌 議員의 姓名
5. 出席한 國務委員·政府委員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陳述人의 姓名
6. 審査案件名
7. 議事
8. 表決數
9. 委員長의 보고
10. 委員會에서 終結되거나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된 案件名과 그 內容
11. 기타 委員會 또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項

②委員會의 議事는 速記方法으로 이를 記錄한다. 그러나 委員會의 議決로 이를 省略할 수 있다.

③委員會會議錄에는 委員長 또는 委員長을 代理한 幹事가 署名·捺印한다.

第 66 條 (準用規定) 委員會에 관하여는 이 章에 規定한 이외에 第 6 章 및 第 7 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 委員會에서의 動議는 특별히 多數의 贊成者를 요하는 規定에 불구하고 2 人이상의 贊成으로 議題가 될 수 있으며 表決에 있어서는 舉手로 表決할 수 있다.

第 6 章 會 議

第 1 節 開議·散會와 議事日程

第 67 條 (開議) 本會議는 午後 2 時에 開議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 또는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第 68 條 (議事定足數) ①本會議는 在籍議員 3 分の 1 이상의 出席으로 開議한다.

②會議중 第 1 項의 定足數에 達하지 못할 때에는 議長은 會議의 中止 또는 散會를 宣布한다.

第 69 條 (散會)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의 議事が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散會를 宣布한다.

第 70 條 (會議의 公開) ①本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議長의 提議 또

는 議員 10人이상의 連署에 의한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但書에 의한 提議나 動議에 대하여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第71條(議事日程의 作成) ①議長은 開議日時·附議案件과 그 順序를 記載한 議事日程을 作成하고, 늦어도 本會議開議 前日까지 本會議에 보고한다. 그러나 再開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議事日程의 作成에 있어서는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③議長은 특히 緊急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議의 日時만을 議員에게 통지하고 開議할 수 있다.

第72條(議事日程의 變更) 議員 20人이상의 連署에 의한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議長은 議事日程의 順序를 變更하거나 다른 案件을 議事日程에 追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議員의 動議에는 理由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動議에 대하여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第73條(議事日程의 未了案件) 議長은 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에 대하여 會議을 열지 못하였거나 會議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日程을 정한다.

第2節 發議·委員會回附·撤回와 翻案

第74條(議案의 發議 또는 제출) ①議員은 20人이상의 贊成으로 議案을 發議할 수 있다. 다만, 豫算上의 措置가 隨伴하는 法律案 기타 議案은 30人이상의 贊成으로 發議할 수 있다.

②議案을 發議하는 議員은 그 案을 갖추고 理由를 붙여 所定의 贊成者와 連署하여 이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豫算明細書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第75條(常任委員會 回附) ①議長은 議案이 發議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印刷하여 議員에게 配付하고 本會議에 보고하며 所管常任委員會에 回附하여 그 審査가 끝난 후, 本會議에 附議한다. 다만, 閉會 또는 休會 중에는 本會議 보고를 省略하고 回附할 수 있다.

②議長은 案件이 어느 常任委員會의 所管에 속하는지 明白하지 아닐 때에는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常任委員會에 回附하되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닐 때에는 議長이 所管常任委員會를 決定한다.

第76條(特別委員會 回附) ①議長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案件에 대하여는 本會議의 議決을 얻어 이를 特別委員會에 回附한다.

②議長은 特別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에 관련이 있는 다른 案件을 그 特別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第77條(豫算案·決算의 回附) 豫算案과 決算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하고 그 審査가 끝난 후 本會議에 附議한다. 이 경우에

豫算案은 政府의 施政演說을 들은 후 回附한다.

第 78 條 (審査期間) ①議長은 審査期間을 정하여 案件을 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경우에 委員會가 理由없이 그 期間內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議長은 中間報告를 들은 후 다른 委員會에 回附하거나 바로 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第 79 條 (體系·字句의 審査) ①委員會에서 法律案의 審査를 마치거나 立案한 때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하여 體系와 字句에 대한 審査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 法制司法委員長은 그 審査에 있어서 提案者의 趣旨說明과 討論을 省略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審査에 대하여 議長은 審査期間을 정할 수 있으며, 그 期間內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第 80 條 (委員會에서 폐기된 議案) ①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된 議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委員會의 決定이 本會議에 보고된 날로부터 閉會 또는 休會 중의 期間을 除한 7 日이내에 議長 또는 議員 30 人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議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한다.

②第 1 項但書의 要求가 없을 때에는 그 議案은 폐기된다.

第 81 條 (委員會의 提出議案) 委員會에서 제출한 議案은 그 委員會에 回附하지 아니한다. 다만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다른 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第 82 條 (動議)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動議는 2 人이상의 贊成으로 議題가 된다.

第 83 條 (議案·動議의 撤回) ① 議員은 그가 發議한 議案 또는 動議를 撤回할 수 있다. 그러나 本會議에서 議題가 된 후에는 本會議의,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후에는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 政府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議題가 된 政府提出의 議案을 修正 또는 撤回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 84 條 (翻案) 翻案動議는 本會議에서는 議案을 發議한 議員이 그 議案을 發議할 때의 贊成者 3 分の 2 이상의 同意로, 委員會에 있어서는 委員의 動議로 發議하되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 分の 2 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그러나 本會議에 있어서는 案件이 政府에 移送된 후에는 翻案할 수 없으며, 委員會에 있어서는 本會議에 議題가 된 후에는 翻案할 수 없다.

第 85 條 (一事不再議) 否決된 案件은 같은 會期중에 다시 發議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第 3 節 議事와 修正

第 86 條 (案件審議) 本會議는 案件을 審議함에 있어서 그 案件을 審查한 委員長의 審查報告를 듣고 質疑·討論을 거쳐 表決한다. 다

만, 委員會의 審査를 거치지 아니한 案件에 대하여는 提案者가 그 趣旨를 說明하여야 하고, 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案件에 대하여는 豫算案등 議長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案件을 제외하고는 質疑를 ~~하지~~ 하지 아니하며 議決로 討論을 省略할 수 있다.

第 87 條〔再回附〕 本會議는 委員長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決로 다시 그 案件을 같은 委員會 또는 다른 委員會에 回附할 수 있다.

第 88 條 (修正動議) ①議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그 案을 갖추고 理由를 붙여 議員 30人이상의 贊成者와 連署하여 미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豫算案에 대한 修正動議는 議員 50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修正案은 贊成없이 議題가 된다.

③委員會는 所管事項 이외의 案件에 대하여는 修正案을 제출할 수 없다.

④議案에 대한 代案은 委員會에서 그 原案을 審査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議長은 이를 그 委員會에 回附한다.

第 89 條 (修正案의 表決順序) ①同一議題에 대하여 數個의 修正案이 제출된 때에는 議長은 다음 各號에 의하여 表決의 順序를 정한다.

1. 最後로 제출된 修正案부터 먼저 表決한다.

2. 議員의 修正案은 委員會의 修正案보다 먼저 表決한다.

3. 議員의 修正案이 數個 있을 때에는 原案과 差異가 많은 것부터 먼저 表決한다.

②修正案이 全部 否決된 때에는 原案을 表決한다.

第 90 條 (議案의 整理) 本會議는 議案의 議決이 있는 후 서로 저
촉되는 條項 · 字句 · 數字 기타의 整理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議
長 또는 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

第 91 條 (議案의 移送) ①國會에서 議決된 議案은 議長이 이를 政府
에 移送한다.

②憲法 第 89 條第 6 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이 公布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公布期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5 日이내에 議長이 이를 公
布한다. 이 경우에는 大統領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4 節 發 言

第 92 條 (發言의 許可) ①議員이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議長에
게 通知하여 許可를 얻어야 한다.

②發言通知를 하지 아니한 議員은 通知를 한 議員의 發言이 끝난
다음 議長의 許可를 얻어 發言할 수 있다.

③議事進行에 관한 發言은 發言要旨를 議長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하
며, 議長은 議題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緊急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許可하고, 그 이외의 것은 議長이 그 許可의
時期를 정한다.

第 93 條 (發言의 계속) 發言은 그 途中에 다른 議員의 發言에 의하
여 停止되지 아니하며, 散會 또는 會議의 中止로 發言을 마치지 못
한 때에는 다시 그 議事が 開始되면 議長은 먼저 發言을 계속하게
한다.

第 94 條 (補充報告) 議長은 委員長 또는 委員長이 指名한 少數意見者
가 委員會의 報告를 補充하기 위하여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發言에 優先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第 95 條 (議題외 發言의 금지) ① 모든 發言은 議題외에 미치지거나 許
可받은 發言의 性質에 反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議員은 議事進行을 遲延시키거나 방해할 目的으로 新聞·雜誌·刊行
物 기타 文書등을 朗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96 條 (發言回數의 制限) 議員은 同一議題에 대하여 2 회에 限하여
發言할 수 있다. 그러나 質疑에 대하여 答辯할 때와 委員長·發議
者 또는 動議者가 그 趣旨를 說明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97 條 (發言時間의 制限) ① 議員의 發言時間은 20 分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質疑} 補充發言·議事進行發言 및 身上發言時間은 10 分
을 초과할 수 없다.

② 議長은 政府에 대한 質問, 豫算案 및 決算,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
員解任案 기타 重要하다고 인정한 案件에 限하여는 30 分까지 許可
할 수 있다.

③ 議長은 交涉團體를 가진 政黨을 代表하는 議員이나 交涉團體의 代
表議員이 政黨 또는 交涉團體를 代表하여 發言할 때에는 40 分까지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交涉團體所屬의 다른 發言者의 發
言時間은 10 分을 초과할 수 없다.

④ 議員이 時間制限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部分에 대하여는 議長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會議錄에 揭載할 수 있다.

第 98 條 (發言者數의 制限) ①議長은 同一議題에 대하여 發言者數를 交渉團體別로 그 所屬議員數의 比率에 따라 各 3人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交渉團體에 속하지 아니하는 議員의 發言者數는 議長이 이를 정한다.

第 99 條 (討論의 通告) ①議事日程에 올린 案件에 대하여 討論하고자 하는 議員은 미리 反對 또는 贊成의 뜻을 議長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②議長은 第 1 項의 通告를 받은 順序와 그 所屬交渉團體를 考慮하여 反對者와 贊成者를, 交代로 發言하게 하되 反對者에게 먼저 發言하게 한다.

第 100 條 (議長의 討論參加) 議長이 討論에 參加할 때에는 議長席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案件에 대한 表決이 끝날 때까지 議長席에 돌아갈 수 없다.

第 101 條 (質疑 또는 討論의 終結) ①質疑 또는 討論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終結을 宣布한다.
②各 交渉團體에서 1人 이상의 發言이 있을 때에는 議員의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議長은 質疑나 討論의 終結을 宣布할 수 있다. 그러나 質疑 또는 討論에 參加한 議員은 質疑나 討論의 終結을 動議할 수 없다.
③第 2 項의 動議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第 5 節 表 決

第102條(議決定足數) 議事は 憲法 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
는 限 在籍議員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03條(表決의 宣布) ①表決할 때에는 議長이 表決할 案件의 題
目を 宣布하여야 한다.

②議長이 表決을 宣布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案件에 관하여 發言할
수 없다.

第104條(表決의 參加와 意思變更의 금지) ①表決을 할 때에는 會
議場에 있지 아니한 議員은 表決에 參加할 수 없다. 그러나 投票
에 의하여 表決할 때에는 投票函이 閉鎖될 때까지 表決에 參加할
수 있다.

②議員은 表決에 있어서 표시한 意思를 變更할 수 없다.

第105條(表決方法) ①表決할 때에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
하게 하여 可否를 決定한다.

②議長의 提議 또는 議員의 動議로 本會議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記名 또는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③議長은 案件에 대한 異議의 有無를 물어서 異議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可決되었음을 宣布할 수 있다. 그러나 異議가 있을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方法으로 表決하여야 한다.

④憲法改正案은 記名投票로 表決한다.

⑤大統領으로부터 還付된 法律案과 기타 人事에 관한 案件은 無記

名投票로 表決한다.

⑥國會에서 實施하는 各種選舉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無記名投票로 한다. 投票의 結果 當選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와 次點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한다. 다만, 得票數가 같을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者로 한다.

⑦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案이 發議된 때에는 本會議에 보고된 때로부터 24時間이후 72時間이내에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이 期間內에 表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解任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第106條(表決結果宣布) 表決이 끝났을 때에는 議長은 그 結果를 宣布한다.

第107條(投票節次) ①投票할 때에는 各 議員은 먼저 名牌를 名牌函에, 다음에 投票用紙를 投票函에 投入한다.

②投票할 때에는 議長은 議員중에서 若干人의 監票委員을 指名하고 그 委員의 參與下에 職員으로 하여금 名牌와 投票의 數를 點檢·計算하게 한다.

③投票의 數가 名牌의 數보다 많을 때에는 再投票를 한다. 다만, 投票의 結果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7 章 會 議 錄

第108條(會議錄) ①國會는 會議錄을 作成하고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1. 開議·會議中止와 散會의 日時
2. 議事日程

3. 出席議員의 數
4. 開會式에 관한 事項
5. 議員의 異動
6. 議席의 配定과 變動
7. 議案의 發議·提出·回附·還付·移送과 撤回에 관한 事項
8. 출석한 國務委員과 政府委員의 姓名
9. 附議案件과 그 內容
10. 議長의 報告
11. 委員會의 報告書
12. 議事
13. 表決數
14. 記名投票의 投票者 姓名
15. 議員의 發言補充書
16. 書面質問과 答辯書
17. 기타 本會議 또는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項
 - ②本會議의 議事は 速記方法으로 이를 記錄한다.
 - ③會議錄에는 議長, 議長을 代理한 副議長, 臨時議長과 事務總長 또는 그 代理者가 署名·捺印하여 國會에 保存한다.

第 109 條(參考文書의 揭載) 議員이 그 發言에 參考되는 簡單한 文書를 會議錄에 揭載하려고 할 때에는 議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 110 條(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 ①發言한 議員은 會議錄이 配付된 날의 다음날 午後 5時까지 그 字句의 訂正을 議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 그러나 發言의 趣旨를 變更할 수 없다.

②會議에서 發言한 國務總理·國務委員 및 政府委員 기타 發言者에 있어서도 第1項과 같다.

③議員이 會議錄에 記載한 事項과 會議錄의 訂正에 관하여 異議를 申請한 때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111條(會議錄의 配付·頒布) ①會議錄은 議員에게 配付하고 一般에게 頒布한다. 그러나 秘密을 요한다고 議決한 部分과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部分 및 議長이 取消하게 한 發言은 이를 掲載하지 아니한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의 內容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③會議錄을 轉載하거나 複製하고자 하는 者는 議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8章 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과 質問

第112條(國務總理·國務委員 및 政府委員의 任免通知) 政府는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및 政府委員인 公務員을 任免한 때에는 國會에 通知한다.

第113條(國務委員등의 發言)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本會議나 委員會에서 發言하려고 할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에게 미리 通知하여야 한다.

第114條(國務委員등의 出席要求) ①本會議는 그 議決로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發議는 議員 20人이상이 理由를 明示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그 議決로 議長을 經由하여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의 출석을 要求할 수 있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答辯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代理하여 출석·答辯하게 할 수 있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의 출석·答辯을 要求한 경우에 質問을 하고자 하는 議員은 미리 質問의 要旨와 所要時間을 記載한 質問要旨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하며, 議長은 늦어도 質問時間전 24時까지 그 質問要旨書가 政府에 到達되도록 送付하여야 한다.

⑤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特定한 事案에 대하여 質問하기 위하여 大法院長·憲法委員會委員長·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監查院長 또는 그 代理人의 출석을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委員會는 議長을 經由하여야 한다.

第115條(政府에 대한 書面質問) ①議員이 政府에 書面으로 質問하려고 할 때에는 議員 20人이상의 贊成을 얻어 質問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議長은 第1項의 質問書가 제출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政府에 移送한다.

③政府는 質問書를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書面 또는 口頭로 答辯하여야 한다. 그 期間內에 答辯하지 못할 때에는 그 理由와 答辯할 수 있는 期限을 國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하여 質問하고자 하는 議員은 書面으로 다시 質問할 수 있다.

第 9 章 請 願

第116條(請願書의 제출) ①國會에 請願을 하려고 하는 者는 議員의 紹介를 얻어 請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請願書에는 請願者의 住所·姓名(法人의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을 記載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裁判에 간섭하거나 國家機關을 冒瀆하는 內容의 請願은 이를 接受하지 아니한다.

第117條(請願要旨書의 作成과 回附) ①議長은 請願을 接受한 때에는 請願要旨書를 作成하여 各 議員에게 印刷·配付하는 동시에 그 請願書를 所管委員會에 回附하여 審査를 하게 한다.

②請願要旨書에는 請願者의 住所·姓名·請願의 要旨·紹介議員의 姓名과 接受年月日을 記載한다.

第118條(請願審査·보고등) ①請願을 紹介한 議員은 所管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請願의 趣旨를 說明하여야 한다.

②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하기로 決定한 請願은 意見書를 첨부하여 議長에게 보고한다.

③委員會에서 本會議에 附議할 필요가 없다고 決定한 請願은 그 處理結果를 議長에게 보고하고, 議長은 請願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19條(政府移送과 處理報告) ①國會가 採擇한 請願으로서 政府에서 처리함이 适当하다고 인정되는 請願은 意見書를 첨부하여 政府에 移送한다.

②政府는 第1項의 請願을 처리하고 그 處理結果를 遲滯없이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0章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第120條(國政調査) ①本會議는 그 議決로 國政에 관한 特定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發議는 議員 30人이상이 理由를 明示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委員會에서 第1項의 國政을 調査하고자 할 때에는 本會議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121條(委員會등의 構成) ①本會議는 國政을 調査하고자 할 때에는 所管委員會로 하여금 調査하게 하거나 議員 2人이상으로 構成되는 特別委員會 또는 調査班으로 하여금 이를 行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調査特別委員會 또는 調査班은 同一한 交涉團體의 議員만 으로는 構成할 수 없다.

第122條(調査方法) ①國政調査는 調査事案과 관련된 證言의 聽取와 提出書類의 審査에 의하되 國會에서의 證言·鑑定에 관한 節次를 정한 法律의 規定에 따라 행한다.

②第1項의 調査로는 所期の 目的을 達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事案에 대하여는 議長의 承認을 받아 現地에 出張하여 調査할 수 있다.

③議員이 調査를 함에 있어서 事務補助者가 필요할 때에는 國會事務處 職員의 補助를 받을 수 있다.

第123條(보고·書類提出要求)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調查班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調查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要求할 수 있다.
②委員會가 第1項의 要求를 할 때에는 議長을 經由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第1項의 要求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法律에서 그 보고와 제출을 금지 또는 制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理由를 들어 그 要求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24條(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の 出席要求)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調查를 위하여 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の 출석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要求할 때에는 議長을 經由하여야 한다.
②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에 대하여는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와 日當을 支給한다.
③證言·鑑定에 관한 節次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25條(調查上の 注意) ①議員은 利害關係가 있거나 기타 公正을 잃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事案에 대하여 調查를 할 수 없다.
②議長은 第1項의 事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議員이 행하는 調查를 정지시키고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調查하게 하여야 한다.
③調查를 할 때에는 調查를 받는 國家機關의 機能과 活動을 沮害하거나 國政上の 機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議員 또는 그 補助者는 調查로 인하여 알게 된 他人의 秘密을 정

당한 事由없이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126 條(調査結果의 보고) ① 調査를 完了한 때에는 委員長 또는 調査班長은 遲滯없이 그 調査報告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議長은 委員長 또는 調査班長으로 하여금 中間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第 127 條(調査報告에 대한 처리) ① 國會가 採擇하기로 議決한 調査結果報告書중 政府에서 처리함이 妥當하다고 인정되는 事項은 政府에 移送한다.

② 政府는 第 1 項의 事項을 처리하고 그 處理結果를 遲滯없이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 11 章 彈 劾 訴 追

第 128 條(彈劾訴追의 發議) ① 彈劾訴追의 發議가 있을 때에는 議長은 즉시 本會議에 보고하고, 本會議는 議決로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本會議가 第 1 項에 의하여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하기로 議決하지 아니한 때에는 本會議에 보고된 때로부터 24 時間이후 72 時間이내에 彈劾訴追의 與否를 無記名投票로 表決한다.

③ 彈劾訴追의 發議에는 被訴追者의 姓名·職位와 彈劾訴追의 事由·證據 기타 調査上 參考가 될만한 資料를 提示하여야 한다.

第 129 條(回附된 彈劾訴追事件의 調査) ① 法制司法委員會가 第 128 條

의 發議를 回附받았을 때에는 遲滯없이 調査·보고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調査에 있어서는 第122條 및 第12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0條(調査의 協助) 調査를 받는 國家機關은 그 調査를 신속히 完了시키기 위하여 充分한 協助를 하여야 한다.

第131條(彈劾訴追의 議決) 本會議의 彈劾訴追의 議決은 被訴追者의 姓名·職位 및 彈劾訴追의 事由를 표시한 文書(이하 “ 訴追議決書 ”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第132條(訴追議決書의 送達과 效果) ①彈劾訴追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遲滯없이 訴追議決書의 正本을 法制司法委員長인 訴追委員에게, 그 謄本을 憲法委員會·被訴追者와 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送達한다.

②訴追議決書가 送達된 때에는 被訴追者의 權限行使는 停止되며, 任命權者는 被訴追者의 辭職願을 接受하거나 解任할 수 없다.

第12章 辭職·退職·缺員과 資格審査

第133條(辭職) ①國會는 그 議決로 議員의 辭職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閉會중에는 議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

②議員이 辭職하고자 할 때에는 本人이 署名·捺印한 辭職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辭職의 許可與否는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表決한다.

第134條(退職) ①議員이 겸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하거나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開始日이후에 解職된 職의 權限을 行使한 때에는 議員의 職에서 退職된다.

②議員이 法律에 規定된 被選舉權이 없게된 때에는 退職된다.

第 135 條(關員通知) 議員이 關員된 때에는 議長은 15日이내에 大統領과 ~~管轄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 136 條(資格審査의 請求) 議員이 다른 議員의 資格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30人이상의 連署로 資格審査를 議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第 137 條(請求書의 委員會回附와 答辯書의 제출) ①議長은 第 136 條의 請求書를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하고 그 副本을 被審議員에게 送達하여 期日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하게 한다.

②被審議員이 天災·地變 또는 疾病·기타 事故에 의하여 期日內에 答辯書를 제출하지 못함을 證明한 때에는 議長은 再次 期日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第 138 條(答辯書의 委員會審査) ①議長이 答辯書를 接受한 때에는 이를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한다.

②法制司法委員會는 請求書와 答辯書에 의하여 審査한다.

③期日內에 答辯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制司法委員會는 請求書만으로 審査를 할 수 있다.

第 139 條(當事者의 審問과 發言) ①法制司法委員會는 필요한 때에는 議長을 經由하여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을 출석하게 하여 審問할 수 있다.

②請求議員과 被審議員은 委員會의 許可를 얻어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被審議員은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

第 140 條 (議決) ①法制司法委員會에서 審査報告書를 議長에게 제출한 때에는 議長은 本會議에 附議하여야 한다.

②被審議員은 本會議에서 스스로 辯明하거나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辯明하게 할 수 있다.

③本會議는 被審議員의 資格의 有無를 議決로 決定하되 그 資格이 없는 것을 議決함에는 在籍議員 3 分の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 3 項의 決定이 있을 때에는 議長은 그 결과를 書面으로 請求議員과 被審議員에게 送付한다.

第 13 章 秩序와 警護

第 141 條 (議長의 警護權) 會期中 國會의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議長은 國會안에서 警護權을 행한다.

第 142 條 (警衛와 警察官) ①國會의 警護를 위하여 國會에 警衛를 둔다.

②議長은 國會의 警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政府에 대하여 필요한 警察官의 派遣을 要求할 수 있다.

③警衛와 派遣된 警察官은 議長의 指揮를 받아 警衛는 會議場안(傍聽席을 포함한다)에서, 警察官은 會議場밖에서 警護한다.

第 143 條 (會議의 秩序維持) ①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에서 이 法 또는 國會規則에 違背한 發言 또는 行爲를 하거나 國家

의 安全保障에 危害가 되는 言動 또는 그러한 行爲를 煽動하는 言動을 하여 會議場의 秩序를 紊亂하게 하거나 國會의 威信을 損傷하게 한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이를 警告 또는 制止하거나 마이크와 速記를 中斷하거나 그 發言의 取消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命에 응하지 아니한 議員이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當日의 會議에서 發言함을 금지하거나 退場시킬 수 있다.

③議長 또는 委員長은 會議場이 騷亂하여 秩序를 維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議를 中止하거나 散會를 宣布할 수 있다.

第144條(侮辱등 發言의 금지) ①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서 다른 議員을 侮辱하거나 다른 議員의 私生活에 대한 發言을 할 수 없다.

②議員은 國家元首·國務總理·國務委員·政府委員과 證人·鑑定人·參考人·陳述人을 侮辱하거나 그 私生活에 대한 發言을 할 수 없다.

第145條(發言妨害등의 금지) ①議員은 暴力을 行使하거나 會議중 함부로 發言 또는 騷亂한 行爲를 하여 他人의 發言을 방해할 수 없다.

②議員은 會議중 議長이나 委員長의 許可없이 演壇이나 壇上에 登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6條(喫煙등의 금지) ①議員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안에서 飲食이나 喫煙을 할 수 없으며, 議案과 관련없는 新聞·雜誌 기

타 刊行物등을 閱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議員은 會議場안에 모자·외투·단장등 會議에 關係없는 物品을 携帶하거나 搬入할 수 없다. 다만, 身病이나 기타의 理由에 의하여 議長 또는 委員長의 許可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7條(錄音등의 制限) 누구든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會議場안에서는 議長이나 委員長의 許可없이 錄音·錄畫·攝影·中繼放送등의 行爲를 하지 못한다. 傍聽許可를 받은 者도 또한 같다.

第148條(現行犯人の 逮捕) 國會안에 現行犯人이 있을 때에는 警衛 또는 警察官은 이를 逮捕한 후 議長의 指示를 받아야 한다. 다만, 議員은 會議場안에 있어서는 議長의 命令없이 이를 逮捕할 수 없다.

第149條(會議場出入의 制限) 會議場안에는 議員·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 기타 議案審議에 필요한 者와 議長이 許可한 者 이외에는 出入할 수 없다.

第150條(傍聽의 許可) ①議長은 傍聽券을 발행하여 傍聽을 許可한다.
②議長은 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傍聽人數를 制限할 수 있다.

第151條(傍聽의 금지와 身體檢査) ①凶器를 携帶한 者, 酒氣가 있는 者, 精神에 異常이 있는 者 기타 行動이 殊常하다고 인정되는 者는 傍聽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②議長은 필요한 때에는 警衛 또는 警察官으로 하여금 傍聽人의 身體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第 152 條 (傍聽人 에 對한 退場命令) ① 議長은 會議場안의 秩序를 방해하는 傍聽人의 退場을 命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警察官署에 引渡할 수 있다.
② 傍聽席이 騷亂할 때에는 議長은 모든 傍聽人을 退場시킬 수 있다.

第 14 章 懲 戒

第 153 條 (懲戒事由) 國會는 議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그 議決로써 이를 懲戒할 수 있다.

1. 第 26 條 (清廉의 義務등) · 第 27 條 (利權運動의 금지)
第 144 條 (侮辱등 發言의 금지) · 第 145 條 (發言妨害등의 금지) 및 第 146 條 (喫煙등의 금지)의 規定에 違反되는 行爲를 한 때
2. 第 31 條 (兼職) 第 5 項의 規定에 의한 議長의 兼職辭任의 勸告에 不應한 때
3. 第 95 條 (議題의 發言의 금지) 및 第 97 條 (發言時間의 制限)의 規定에 違反하여 議事進行을 顯著히 방해한 때
4. 第 111 條第 2 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非公開會議의 內容을 公表한 때
5. 國政調査 및 彈劾訴追事件의 調査를 함에 있어서 第

125條(調査上の注意)의 規定에 違反되는 行爲를 한 때

6. 第143條(會議의 秩序維持)에 規定된 發言과 行爲를 하거나 이에 대한 議長 또는 委員長의 命令이나 措置에 不應한 때

7. 正當한 理由없이 國會集會日로부터 7日이내에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出席要求書를 받은 후 5日이내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

第154條(懲戒의 要求와 回附) ①議長은 第153條各號의 1에 해당하는 懲戒對象議員(이하 “懲戒對象者”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本會議에 보고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한다.

②委員長은 所屬委員중에서 懲戒對象者가 있을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에 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한다.

③議員이 懲戒對象者에 대한 懲戒를 要求하고자 할 때에는 議員 20人이상의 贊成으로 懲戒事由를 記載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第144條(~~侮辱등 發言의 금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議員에 대하여 侮辱을 당한 議員이 懲戒를 要求할 때에는 贊成議員을 요하지 아니하며, 懲戒事由를 記載한 要求書를 議長에게 제출한다.

⑤第3項과 第4項의 懲戒要求가 있는 때에는 議長은 이를 遲滯없이 本會議에 附議하여 討論을 하지 아니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할 與否를 決定한다.

第155條(懲戒의 要求 또는 回附의 時限) ①第154條第1項 및 第

2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回附는 議長이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 懲戒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또는 委員長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閉會 또는 休會期間을 제외한 3日이내에 法制司法委員會에 回附하여야 한다.

②第15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長의 懲戒對象者 보고와 同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要求는 懲戒事由가 발생한 날, 懲戒對象者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閉會期間중에 懲戒對象者가 있을 경우에는 次回國會의 集會日로부터 3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156條(懲戒의 議事) 懲戒에 관한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第157條(審問) 法制司法委員會는 議長을 經由하여 懲戒對象者와 關係 議員을 출석하게 하여 審問할 수 있다.

第158條(辯明) 議員은 자기의 懲戒案에 관한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辯明하거나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辯明하게 할 수 있다.

第159條(懲戒의 議決) 議長은 法制司法委員會로부터 懲戒에 대한 審査報告書를 接受한 때에는 遲滯없이 本會議에 附議하여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第160條(懲戒의 種類와 그 宣布) ①懲戒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3. 30日이내의 出席停止

4. 除名

②第1項第1號와 第2號의 경우에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그 文案을 作成하여 報告書와 함께 이를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除名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本會議은 다른 懲戒의 種類를 議決할 수 있다.

④懲戒를 議決한 때에는 議長은 公開會議에서 이를 宣布한다.

第161條(除名된 者의 立候補制限) 第160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로 除名된 者은 그로 인하여 關員된 議員의 補關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가 될 수 없다.

第 15 章 補 則

第162條(期間의 起算日) 이 法에 의한 期間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

第163條(規則制定) 國會는 憲法 및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議事와 内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經過措置) 이 法 施行후 이 法에 의한 議長이 選出된 때까지의 國會事務總長의 職務는 國家保衛立法會議事務處長이 代行한다.